



Korean Tax Newsletter

2025년 10월

CONTENTS

세무동향

- 국세청, 202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국세청,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 플랫폼사업자 파산 피해 입점 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예규판례

○ 법원

-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흡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피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합병법인이 이후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행정안전부

- 회생계획 수행 중인 법인의 주식 취득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국세청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소득처분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받은 육아휴직 복직자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기법상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의 조특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세무동향

국세청, 202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은 11.3.(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점과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혁신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5.11.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국세청 보도자료(Link)

○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 (추진 방향) 대대적 투자와 개혁을 통해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체납관리, 신고관리 등 모든 세정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추진 일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26~'27년 과제 개발 및 '28년 본격적인 AI 서비스 개통 추진
- (인프라 구축)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국세업무 특화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최신 GPU를 확보하여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 (데이터 관리)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 및 증빙자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정형화 추진

○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 (각각적 세정지원)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으로 자금유동성 제공
- (신성장 뒷받침) AI 중소기업에 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안내하기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신설하고, 세무검증도 최소화
- (수출기업 지원)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자금유동성 지원, 세무검증 배제 등 실시
- (세무조사 관행 혁신)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

○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 (전수확인 실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유형분류를 통해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조사규모 관리)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

○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 (신고안내 강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여 업무무관비용 공제, 공제한도 초과 등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 방지
- (조세지출 정비) 현재 시행 중인 조세지출 전(全) 항목을 심층 분석·평가하여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 발굴 및 정비 건의

국세청,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26년 투자금액을 '25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24 사업연도(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은 '24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500 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11 월 3 일부터 흠택스를 통해 '투자확대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공지사항\(2025.10.24.\)](#)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국세청 공지사항(Link)
○ 세정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24 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 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6년 투자금액을 '25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세정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24 사업연도(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흡택스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제출기간: '25.11.3. ~ 12.1.

국세청,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26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5년 대비 2%·3%(최소 1 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24 사업연도(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은 '24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500 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11 월 3 일부터 흠택스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공지사항\(2025.10.24.\)](#)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국세청 공지사항(Link)
○ 세정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24 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 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6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5년 대비 2%·3%(최소 1 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세정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24 사업연도(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흡택스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제출기간: '25.11.3. ~ 12.1.

국세청, 플랫폼사업자 파산 피해 입점 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5.10.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국세청 보도자료(Link)

○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입점 판매자,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25.9.30.)하였음

예규판례

[법원]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흡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 두 47074 판결, 파기환송)

■ 쟁점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 2 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 사안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배관, 준설, 포장, 일반건축, 컨테이너, 교량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2021. 9. 9. 원고에게 위 체납 국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짐. 즉,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짐. 나아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짐(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 두 41659 판결 참조)

한편 제 2 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 3 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임(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 누 19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 두 45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 2 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 2 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법원]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 두 60435 판결, 파기환송)

■ 쟁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
-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안

건설회사인 원고는 시행사인 A 회사에 대한 1,030 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A 회사에 490 억 원을 대여하고, 공사대금채권보다 위 대여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 억 원을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음. 그 후 A 회사는 분양수입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77 억 원)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A 회사가 상환한 484 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충당 이후 잔존하였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43.5 억 원)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33.7 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제 1 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1 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 제 8 호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음.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제 1 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 분의 10’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1 호는,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제 1 항 본문에서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2 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 형식 및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이유를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는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제 1 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1 호의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 역시 충족된다고 보아야 함. 양자의 요건을 각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함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은, “법인세법 제 19 조의 2 제 1 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1 호부터 제 13 호까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 8 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음. 여기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위 규정에 정하여진 요건사실이 충족되는 한 그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가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음

더욱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 부족한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채울 것인지의 변제충당 국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 다 551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사법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먼저 충당하지 않고 원고가 가진 별도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원고와 소외 2 회사 간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쉽게 부정되어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보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마땅히 먼저 충당하였어야 한다는 등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 및 그 범위를 임의로 선별하는 것 역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됨

[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 두 59908 판결, 파기환송)

■ 쟁점

(전원합의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안

국내 반도체 회사인 원고는 미국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후, 2013년 미국법인과 그 소송을 종료하고 미국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 법인에게 사용료(로열티, 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만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 법리(대법원 2012 두 18356 판결 등)를 근거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판결요지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한미조세협약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해당함.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먼저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함.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의 ‘사용’은 단지 ‘특허’에만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조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제시된 무형자산 일체에 총체적·포괄적으로 조응하는 개념임. 이 조항은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비밀공식, 상표 및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 지식, 경험, 기능 등 다양한 무형자산을 열거하고 있음. 이 중에는 특허, 의장, 신안 등처럼 등록을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하는 무형자산도 있지만, 저작권, 비밀공정, 지식, 기능 등처럼 그렇지 않은 무형자산도 있음. 이러한 무형자산 일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미의 ‘사용’은 등록을 통하여 독점적 효력을 가지게 된 권리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이나 정보 등의 ‘사용’임 (…)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권 효력 발생지 또는 침해지와 관련된 원칙일 뿐 특허기술의 사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이 아님. 즉 특허권 자체는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 범위 내에서 침해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특허기술은 특허등록 여부나 등록 국가와 무관하게 어디서든 사용될 수 있음 (…)

나. 판례의 변경

이와 달리 특허권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특허의 ‘사용’의 의미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 내에서의 실시’로 해석하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을 관념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 6887 판결,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9두47100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함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해당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피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합병법인이 이후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 2024 지 2095, 2025.9.16., 취소)

■ 쟁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피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합병법인이 이후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사안

A 주식회사(이하 “A”)는 판지 및 종이상자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9.11.29. B 주식회사(이하 “구 B”)의 주식 90%를, 2019.11.30.부터 2020.11.13.까지 나머지 주식 10%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 7 조 제 5 항에 따라 세종특별시 소정면 일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를 과점주주 간주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음

A는 2020.12.24. 구 B 을 흡수합병하면서 법인명을 B 주식회사(이하 “신 B”)로 변경하였고, 그 합병 당시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한법」 제 57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 분의 50 을 경감하고, 나머지 취득세(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1993 년에 설립되어 식품용 포장용기 제조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12.28. 신 B(A)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신 B 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음. 청구법인은 2024.4.11. 처분청에 신 B(A)가 납부하였던 이 건 제①취득세 등과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은 동일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 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대법원 2009.4. 23. 선고 2006 다 81257 판결, 조심 2021 지 2347, 2022.10.6.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 실제 합병에 따른 취득은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신 B(A)가 ‘19.11.29. 구 B 의 주식 90%를, ‘19.11.30.~ ‘20.11.13. 기간 동안 나머지 주식 10%를 취득한 후,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신 B(A)는 ‘20.12.24. 구 B 를 흡수합병하면서 법인명을 신 B로 변경하였고, 합병 당시 구 B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이 건 제①취득세 등과 이 건 제②취득세 등 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기획재정부]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9.30.)

■ 질의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제 1 안)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 (제 2 안)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1 안이 타당합니다.

[행정안전부] 회생계획 수행 중인 법인의 주식 취득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147, 2025.8.4.)

■ 질의

회생계획 수행 중인 법인의 주식 100%를 신주인수의 형태로 취득한 경우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 11138 판결 참고)

또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고)한 바 있음

즉, 회생계획 수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회생절차 중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제한을 받는 점,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

또한, 실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원을 선임하고 정관이 변경되고,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

[국세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소득처분 방법

(서면-2025-법인-2790, 2025.8.26.)

■ 질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소득처분 방법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23.6 월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함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 50 조의 2 제 4 항 제 1 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 27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에 업무용승용차를 직접 사용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받은 육아휴직 복직자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5-소득-0680, 2025.8.27.)

■ 질의

건강보험료를 납입유예받은 육아휴직 복직자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정신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근로자 2 명을 고용하고 있고, 2020 년 근로자 중 1 명이 출산하였으며 해당 직원은 '20.4.16.~'20.12.27.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사용함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건강보험은 납부 예외 및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3 조 제 10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국세청]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아 중기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4511, 2025.8.29.)

■ 질의

공정위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아 중기법상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은 질의법인이 조특법상 실질적 독립성 기준 중 자산기준(자산총액 5 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용 나노분말을 생산하는 연구개발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모회사는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2.7 월 질의법인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질의법인은 계열그룹 편입됨
- 질의법인은 '22.10 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에 계열편입 신고 및 유예 신청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29.7.4.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으며, 질의신청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이하 "중기법"이라 함)상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상태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후단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서면-2025-법인-3283, 2025.9.11.)

■ 질의

질의법인이 상법 제 341 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시 법인주주에게 발생된 의제배당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4.2.1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2(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 5 항에 해당하는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7.7.19. 설립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문, 투자일임 및 금융컨설팅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임
-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법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일부를 「상법」 제 341 조에 따라 취득하고, 「상법」 제 343 조 (주식의 소각) 제 1 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소각하고자 함

회신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 제 343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 18 조의 2 제 2 항 제 8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5 항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